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121호

#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공고

「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」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1일
산업통상부장관

| 처분 내용 | 사업자 | 품목 | 모델 | 안전확인 신고번호 | 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** (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) | 우드라인 | 유아용 의자 | 유아용 의자 | CB082R032-3001 | 2025년 정기 4차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(중결함) |

※ 처분일 : 2026년 2월 11일